

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

1. 주거안정 장학금이란?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

2. 지원 대상

- 가.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나.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6. 1. 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- 다.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라.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권 동의를 완료한 자
- 마.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※ 서울캠퍼스 재학생 미인정 지역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단,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, 강화군 교동면, 삼산면, 서도면 제외

※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지원 계획을 따름

3. 지원 내용

- 가.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 - ※ 단, 방학 계절학기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음
- 나. 지원 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- 다. 지급 시기

구분	1학기		2학기	
해당월	3월분	4~6월분	9월분	10~12월분
지급	4월	7월	10월	1월

4. 우선지원 기준 및 지급제외 기준

가. 우선 지원 기준(국가장학금 신청정보 기준)

번호	기준	비고
1	소득구간이 낮은 자	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
2	다자녀 여부	다자녀 여부 Y > N
3	비기숙사생	비기숙사생 > 기숙사생
4	이수학기가 적은 자	3학기 > 4학기
5	최근 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	최근 학기 평점 평균 전체가 P/F인 경우 전전 학기 성적 적용
6	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	-

※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재단 선발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지원기준 적용

※ 선발 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,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

나. 지원 제외 기준

번호	기준
1	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
2	해당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지급요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3	3월(1학기) 또는 9월(2학기) 중 학적 변동(휴학, 자퇴 등)이 발생한 자
4	학적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 ※ 학적변동일은 '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일자'에 따름
5	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
6	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자
7	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
8	이전 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

※ 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

5. 예산 운영 및 지원 방침

가. 주거안정장학금은 배정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, 예산 소진 시 추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나. 해당 장학은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,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